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08

발의연월일: 2022. 9. 2.

발 의 자:조정식·김윤덕·김홍걸

김두관 · 김주영 · 박성준

이정문 • 민홍철 • 이학영

이해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두어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한 차량 제조용 부품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내 차량 제조사의 신차 출고가 적체되고 있어 해당특례의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하면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4년 12 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 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각각 300만원, 600만원,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를 유도하려는 것임 (안 제109조).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100만원"을 각각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300만원"을 각각 "6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400만원"을 각각 "7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 0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 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
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생	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②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u>100만원</u> 이	1 <u>300</u> 만원
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u>100만원</u> 을	2 <u>300만원</u>
초과하는 경우에는 <u>100만원</u>	<u>300</u> 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	3
터 <u>2022년 12월 31일</u> 까지 제조	<u>2024년 12월 31일</u>
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	
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⑤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u>300만원</u> 이	1 <u>600만원</u>
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u>300만원</u> 을	2 <u>600만원</u>
초과하는 경우에는 <u>300만원</u>	<u>600</u> 만원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	6
터 <u>2022년 12월 31일</u> 까지 제조	<u>2024년 12월 31일</u>

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	
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8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u>400만원</u> 이	1 <u>700만원</u>
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u>400만원</u> 을	2 <u>700</u> 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u>400만원</u>	<u>700</u> 만원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	9
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	2024년 12월 31일

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

는 자동차에 적용한다.